

##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(2024.01.01)

### [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#### 1. 계약기간

-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나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#### 2. 계약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#### 3.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

- 가. 재가복지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, 09:00~18: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나.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(이용)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.

#### 4. 대상자의 자격

-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
- 나.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
- 다.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
- 라.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.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

#### 5. 모집방법

모집방법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,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,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, 홍보지, 차량부착 홍보물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#### 6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- 가.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- 나.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(이용)계약을 체결한다.
- 다.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1) 월 이용한도(장기요양건강보험 85%) :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 85% 건강보험공단이 지급.
  - 2) 본인부담금(장기요양등급인정자 15%) :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 15% 납부.
  - 3) 본인부담금(감경대상자의 경우 9%, 6% 이며,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- 정부부담)

## [계약자, 수급자의 의무]

### 1. 서비스제공자 의무

- 가.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
(단, 병원입원 시는 간호,간병을 제공 할 수 없다)
- 나.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다.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
- 라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- 마. 급여제공 중 알게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

### 2.. 수급자(보호자)의 의무

- 가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나.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
- 다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- 라.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
- 마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
### 3.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

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### 4.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

- 가.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,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.
- 나.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. 다만,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7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.
- 다. 일시적인 병원 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
### 5. 이용절차(모집방법)

- 가.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.
  - 보호자 요구에 의한 입소를 원하는 등급외자의 경우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.
- 나. 신청,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, 정보제공동의서, 서비스제공(이용)계약을 체결 한다.
- 다.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.

### 6. 구비서류

서비스제공(이용)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- 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(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)
- 나. 장기요양인정서
- 다.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라. 복지용구 급여확인서
- 마. 수급자 신분증 사본

## [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]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
4. 제공(이용)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###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변화

|                | 1등급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<br>등급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2023년          | 1,885,000              | 1,690,000              | 1,417,200             | 1,306,200             | 1,121,100             | 624,600             |
| 2024년<br>(증가액) | 2,069,900<br>(184,900) | 1,869,600<br>(179,600) | 1,455,800<br>(38,600) | 1,341,800<br>(35,600) | 1,151,600<br>(30,500) | 643,700<br>(19,100) |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###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

| 2024년 방문요양 등급별 수가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방문당 시간 및 등급         | 2023년 현행수가 | 2024년 변동수가 |
| 60분(1시간) / 가족요양     | 23,480     | 24,120     |
| 90분(1시간30분) / 가족요양  | 31,650     | 32,510     |
| 180분(3시간) / 3,4,5등급 | 52,880     | 54,320     |
| 240분(4시간) / 1,2등급   | 65,000     | 66,770     |